


등록번호	재무과 - 10135
등록일자	2026. 5. 6.
결재일자	2026. 5. 6.
공개구분	공개

	담 당	간 사	위원장
결재	정수민	김민서	
협조자			

2026학년도 제2차 재정위원회

회 의 록

- 일 시: 2026. 4. 30.(목) 14:00
- 장 소: 대학본부 2층 208호



국립부경대학교

2026학년도 제2차 재정위원회 회의록

회의명	2026학년도 국립부경대학교 제2차 재정위원회								
회의개최부서	사무국 재무과								
회의일시	2026. 4. 30.(목) 14:00								
회의장소	대학본부 2층 208호								
참석자명단 (총 15명)	구 분	위 원 명	비 고						
	당연직(6명)	박원용, 김은정, 김철수, 서성용, 박남규, 남형구							
	일반직(9명)	류지열, 윤 민, 강경미	교 원						
		김운호, 배경범	직 원						
		김성언, 최해민	재 학 생						
송재호, 이정규		외부위원							
심의안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25회계연도 대학회계 세입·세출 결산(안) ○ 2025회계연도 대학회계 재무보고서(안) ○ 2026학년도 대학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(안) ○ 「국립부경대학교 대학회계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규정(안) 								
심의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25회계연도 대학회계 세입·세출 결산(안): 원안대로 의결 ○ 2025회계연도 대학회계 재무보고서(안): 원안대로 의결 ○ 2026학년도 대학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(안): 원안대로 의결 ○ 「국립부경대학교 대학회계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규정(안): 제9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함.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0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35%;">원 안</th> <th style="width: 35%;">수정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제9조(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)</td> <td>① 총장은 중장기대학발전계획과 연계한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</td> <td>① 총장은 중장기대학발전계획과 연계한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구 분	원 안	수정안	제9조(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)	① 총장은 중장기대학발전계획과 연계한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	① 총장은 중장기대학발전계획과 연계한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구 분	원 안	수정안							
제9조(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)	① 총장은 중장기대학발전계획과 연계한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	① 총장은 중장기대학발전계획과 연계한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							
표결수	○ 해당없음								

□ 기타의견

- (행복기숙사 소송에 따른 구상권 청구 건)
 - 행복기숙사 소송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필요함. 전임 집행부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학교 재정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공정윤리지원관 등 본부 부서의 사실조사 등이 필요하고, 대학 재정에 대한 의결기구인 재정위원회에서도 구상권 청구와 관련한 요구가 있어야 함.[배경범 위원]
 - 구상권 청구에 대한 결정은 재정위원회 심의·의결사항이 아니며, 전임교원의 인사 및 징계 권한을 가진 교무처에서 조사하여 요구해야한다고 봄.[송재호 위원]
 - 교무처는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나 법적 구상권 청구를 위한 직접적인 조사권한을 행사하는 권한이 없으며 별도의 감사기구(공정윤리지원관)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임.[교무처장]
 - 현 재정위원회 임기가 시작된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당장 구상권 청구에 대한 결정은 어려우며, 행복기숙사 소송 관련 사항(구상권 청구 포함)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함.[윤민, 강경미 위원]
 - 본 사안은 전임 재정위원회에서도 행복기숙사 소송 관련 진상조사에 대해 이미 역설했던 사안임을 고려, 평의원회 및 교수회에서 현 총장님에게 진상조사를 요구하여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.[위원장]